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2011년 1월 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무역정책과 윤종연 과장, 손연미 사무관(02-2110-5316)	

구매확인서 On-line발급 2011.7.1일부터 전면시행

- 지경부, 구매확인서 On-line발급 전면시행을 위한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개정·고시(2011.1.3) -

□ 2011년1월3일, 지식경제부는 **구매확인서 on-line발급의 전면 시행을 위한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을 개정·고시**하였음

○ 이번 개정은 지난 2010년 9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써,

○ 구매확인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**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의무화**하고, **전자발급신청을 위탁**할 수 있는 발급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
□ 동 개정고시에 따라, **2011년 7월 1일부터**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**발급(off-line 발급)은 폐지**되며,

○ uTradeHub 포털(www.utradehub.or.kr) 또는 각 사업자가 발급기관과 직접 연계한 내부전산시스템(ERP) 등을 통해 **on-line으로 발급**받아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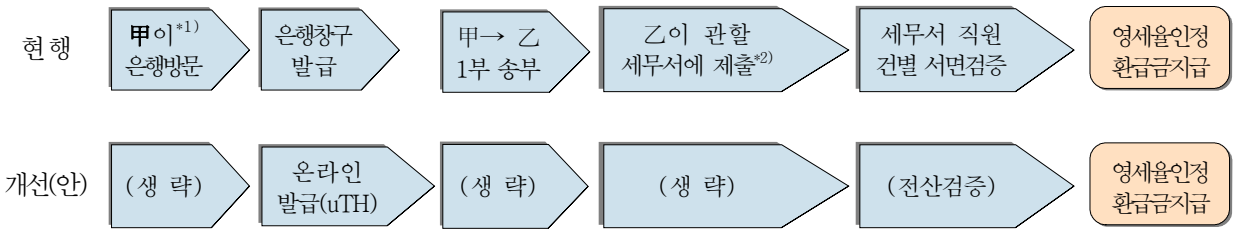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on-line 발급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**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**할 수 있음

※ 발급지원 서비스는 2011년1월3일부터 적용 및 시행

□ 지식경제부는 on-line으로 발급된 **구매확인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**하여,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·추진중이며,

○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,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, 외국환 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

<현행 및 개선(안)의 구매확인서 처리과정 비교>



□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신청 및 발급지원서비스 이용의 자세한 내용은 "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매뉴얼(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및 uTradeHub포털(www.utradehub.or.kr)내 개제예정)"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
<참고1>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

참고1

대외무역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36조 (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) 영 제31조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려는 자는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 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(다만,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한 자도 「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」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)	제36조 (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) --. (-------, -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(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을 「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)
제37조(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) ① (생략)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(물품등)구매(공급)확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1.~ 3. (생 략) ③ (생 략) ④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	제37조(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정한 서류 및 세금계산서(제36조의 단서에 따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)를 「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」 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-------------. 1. ~ 3. (삭 제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

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. ⑤ (생 략) ⑥ <신 설>	----------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 ⑤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 제38조제2항과 같음)
제38조(전자무역문서 발급에 대한 특례) ①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,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문서(이하 EDI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)로 재발급할 경우에는 이미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전자무역문서로 신청한 자에게 발급 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, 개설 및 통지일자,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.	제38조 (발급신청 대행)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.
	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8조(발급신청 대행)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